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1. 수입과목 해소

과 목	과 목 해 소
1. 당 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2. 기 탁 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3. 보 조 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4. 후원회기부금	·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5. 지 원 금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6. 차 입 금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7. 기관지발행 사 업 수 입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등 간행물과 관련된 수입
8. 그 밖의 수입	·예금이자 등 위의 과목 외의 수입

2. 지출과목 해소

항	목	과 목 해 소
선거 비용	선 거 비 용	·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선거 비용외 정치 자금	기본 경비	가. 인 건 비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그 밖의 인건비
	나. 사무소설치· 운 영 비	·건물신축 또는 매입 그 밖의 부대경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 ·소송사건에 필요로 하는 공탁금 그 밖의 제세

		공과금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정치 활동 비	가. 정책개발비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운영경비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개발부서직원의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지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수, 정책자료 제작비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비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 대회는 제외)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정책회의 개최비 ·그 밖의 정책개발비
	나. 조직활동비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 ·홍보 관련 경비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한 경비 ·그 밖의 조직활동비
	다.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여성 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단체·법인과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부서의 운영경비 ·정당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
	라. 청년정치 발전비	·청년의 정치참여확대에 관한 경비 ·그 밖의 청년정치발전비
	마. 지원금	·정당의 각급 당부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지원금
	바. 그 밖의 경비	·상기 과목 외의 지출